

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4. 8. .

발 의 자 : 박선미 의원

1. 제안이유

하남시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18조제5항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개체 수 관리를 비롯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,
-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목적대로 개체수 조절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반려인과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